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2026. 7. 31 개정)

* 본 설명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거래설명서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한양증권

목 차

Ⅰ. 요약(핵심)설명서.....1

Ⅱ.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4

Ⅲ.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7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7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12

2-1. 기본예탁금 및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 과정.....12

2-2. 수탁 및 매매제도.....13

2-3. 위탁증거금제도.....16

2-4. 정산, 결제, 인수도.....18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20

4.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수탁의 거부사유 안내.....21

Ⅳ. 금융소비자의 권리..... 22

Ⅰ. 요약(핵심)설명서

※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 장내파생상품[주]은 ① 거래조건이 표준화 되어 있고, ② 한국거래소에 의해 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 일일정산 및 반대매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장내파생상품은 **'증권'과 달리 투자원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본 설명서에서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 분	장내파생상품	해외 장내파생상품 (해외 선물·옵션)	해외 장내파생상품 (FX마진거래)	장외파생상품	ELW
법적성격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거래장소	**한국거래소**	해외파생상품 거래소	장외시장 (표준화)	장외시장 (맞춤형)	한국거래소
주요상품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미니나스닥100 선물 등	이종통화쌍 (EUR/USD 등)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등	코스피200 ELW 등
거래방법	**공개호가방식/전자거래시스템**			거래당사자간 계약	공개호가방식/ 전자거래 시스템
신용위험	**한국거래소가 계약이행 보증**	해외청산기관이 계약이행 보증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거래상대방 계약 불이행위험 존재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노출
증거금	**증거금 납입**			증거금 납입	증거금 없음
일일정산	**일일정산 시행**			일일정산 없음 (필요시 일정주기 정산)	일일정산 없음 (만기 정산)
반대매매	**반대매매 시행**			일부 시행	없음
특징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환율변동위험 수반 ·각국 거래소별 거래조건등 상이	환율변동위험 수반	일반투자자는 위험회피목적 거래만 가능	발행주체에 따라 발행조건 다양

□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

○ 발생가능한 불이익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 없이 계약이 강제 청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증거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높은위험)

-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은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6단계 중 **1단계(매우 높은 위험)**로 분류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위험등급	투자자성향	유의사항
1등급 (매우높은위험)	공격투자형	**위험선호도가 매우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2등급 (높은위험)	적극투자형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3등급 (다소높은위험)	위험중립형	**위험선호도가 다소 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4등급 (보통위험)	안정추구형	투자에는 그와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5등급 (낮은위험)	안정형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6등급 (매우낮은위험)	안정형	예·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Q1.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1.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의무**가 있으며, 일반 개인금융소비자는 **사전교육(최저 1시간), 모의거래과정(최저 3시간 이상)**을 거쳐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선물(코스피 200변동성지수 제외), 옵션매수 시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

** 일반개인투자자가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경험(계좌개설 후 미체결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도 필요합니다.

Q2. 위탁증거금의 부족으로 추가 예탁이 필요하나 기한까지 불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2.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위탁증거금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위탁증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요?

A3. 현금, 대용증권 등으로 납입 가능합니다.

□ 민원, 상담 연락처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상담센터(1588-214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ygood.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Ⅱ.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위험성(장내파생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 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 변동 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 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 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 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 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

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야간에는** 유동성 등이 부족하여 정규거래시간 대비 체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원치 않는 가격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9. **야간에는** 해외 금융시장 이벤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규거래시간 대비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 정규거래 마감업무 지연 등 사유 발생 시, **거래소가 야간거래시간 변경 또는 미개장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관련사항은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1. 야간에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 없어 이론가격 등 투자 참고지표가 제한되어, **시장참가자의 투자전략 등에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Ⅲ.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1) 개념

▶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 분	상품내역
주가지수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 코스닥150위클리옵션 등
상장지수상품	ETF 선물 등
변동성지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개별주식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채권/금리	3년, 5년, 10년, 30년 국채선물 등
통화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Commodity	금선물, 돈육선물 등

▶ 계약단위 :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가격표시방법 :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월)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일일 가격제한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 시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시장이 주식시장 보다 조기 개장한 시간 동안(08:45~09:00)에는 1단계 가격제한만 적용)

<주식파생상품 등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KRX300선물 등	±8%	±15%	±20%
	코스피200옵션·코스피200위클리옵션·코스닥150옵션·코스닥150위클리옵션 등			
	변동성지수선물 등	±30%	±45%	±60%
주식상품 등	주식선물 등	±10%	±20%	±30%
	주식옵션 등			
	ETF선물 등			

※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 거래 시 주식파생상품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만 적용되며 그 외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직전 거래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
(직전 거래일 및 해당거래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②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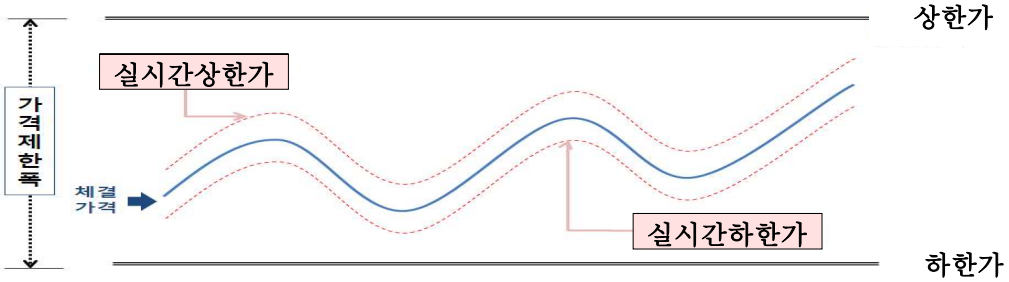
(1) **가격급변**의 경우 :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 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 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확대**

(2) **주식 CB 발동** 경우 :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 중단 후 단일가 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 (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 20%)

③ **실시간가격제한제도**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 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 변동폭인 최소 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 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야간거래 시에는 장중 직전체결가격과의 가격 연속성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1)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미국달러 선물 등

(2)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3)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p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25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6,250만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 표시 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25만원=12,500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장내파생상품거래는 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 월, 가격 표시 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②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③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손익구조

▶ 선물거래 : 선물거래의 손익은 거래 진입시점과 청산시점의 선물가격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즉, 선물 매수 이후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물 매수자는 이익을 보며, 선물 매도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선물 매도자는 이익을 보고, 선물 매수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예시> 선물거래 손익계산의 예

※ 코스피200선물을 최종거래일 2 영업일 전에 1계약 매수/매도 가정
- 선물매수자 손익 : [275p(청산가격) - 270p(진입가격)] × 25만원 × 1계약 = 125만원
- 선물매도자 손익 : [270p(진입가격) - 275p(청산가격)] × 25만원 × 1계약 = -125만원
 * 선물매수자/매도자 손익은 일일정산제도에 따라 수수하는 차금(당일차금, 갱신차금, 최종결제차금)의 합계액과 동일 (아래 표 ①+②+③)

구 분	진입 시점(D-2일)			D-1일		최종거래일(D)	
	거래 가격	정산 가격[주1]	당일 차금(①)[주2]	정산 가격	갱신 차금(②)[주2]	결제 가격	최종결제 차금(③)
선물 매수자	270p	260p	-250만원[주2]	271p	+275만원[주3]	275p	+100만원[주4]
선물 매도자	270p	260p	+250만원	271p	-275만원	275p	-100만원

주1) 매영업일의 선물 종가(최종약정가격이 없을 경우, 선물이론정산가격)를 이용하여 일일정산
주2) 당일의 약정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 × 거래승수 × 약정수량
주3)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당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 × 거래승수 × 약정수량
주2) (260p – 270p) × 25만원(거래승수) × 1계약 = -250만원 (매수자 지급 / 매도자 수취)
주3) (271p – 260p) × 25만원(거래승수) × 1계약 = 275만원 (매수자 수취 / 매도자 지급)
주4) (275p – 271p) × 25만원(거래승수) × 1계약 = 100만원 (매수자 수취 / 매도자 지급)

▶ 옵션거래 : 옵션의 손익은 옵션의 유형(콜옵션/풋옵션), 거래 포지션(매수/매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옵션 행사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고(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고) 그 폭이 옵션프리미엄을 상회하는 만큼 이익(옵션매도자 손실)을 보게 되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풋옵션의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옵션프리미엄 만큼 손실(옵션매도자 이익)이 발생합니다.

<예시> 콜옵션 손익계산의 예

※ 행사가격 300p인 코스피200 콜옵션을 프리미엄 3p에 1계약 매수/매도한 경우

구 분	만기전 반대거래시 (반대거래 가격 = 4p)	만기 청산시	
		기초자산=305p	기초자산=295p
옵션 매수자	(4p-3p)×25만원×1계약=25만원	(305p-300p-3p)×25만원×1계약=50만원	권리포기
옵션 매도자	-(4p-3p)×25만원×1계약=-25만원	-(305p-300p-3p)×25만원×1계약=-50만원	3p×25만원×1계약=75만원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2-1. 기본예탁금 및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 과정

(1) 기본예탁금 구분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시 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일반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

▶ **[파생상품 교육과정]**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일반개인투자자는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도시행일('19.12.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일반개인투자자 거래경험 보유여부 점검

▶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구분		최소 요건
기본예탁금	선물(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옵션매수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거래	2천만원 이상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위한 거래경험*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 일반개인투자자에게 적용

2-2. 수탁 및 매매제도

(1) 주문

▶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 정규거래와 야간거래 간호가의 효력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제출한 호가는 해당 야간거래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유효하며 야간거래 종료 시까지 체결되지 않는 호가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야간 거래 시, 호가수량한도와 누적호가수량한도는 정규거래의 1/2로 축소하여 적용되며 상품별 호가수량한도와 누적호가수량한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 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 의제** 후 호가 처리됨

◆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 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②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③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2) 거래의 체결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①최초약정가격(정규거래를 08:45에 개시하는 시장 : 정규거래 개시전 15분간, 그 외 시장 : 정규거래 개시 전 30분간, 야간거래의 경우 개시전 10분간), ②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③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 간)

▶ 단,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 거래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래시간

▶ 시장의 거래시간은 정규거래시간(당일 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 까지)과 야간거래시간(전일 18시 부터 당일 6시 까지)으로 구분되며 정규거래 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의 거래시간은 08:45~15:45입니다(돈육선물은10:15~15:45)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국내 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08:45~15:20(단, 변동성지수선물은 08:45~15:35),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의 경우 08:45~11:30입니다. (단, 3개월 무위험지표 금리선물은 08:45~15:45, 통화옵션은 08:45~15:30, 금선물은 08:45~15:20, 돈육선물은 10:15~15:45)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은 해당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하여,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합니다.

※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및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일) 시장의 거래일은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 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 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래일로 봅니다. 야간거래의 경우, 야간거래 개시 시점이 속한 날이 정규거래의 휴장일이면 당일 야간거래는 개시하지 않습니다.

(4) 거래의 중단

▶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 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도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 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다만, 야간거래시간에는 CB발동 기준이 되는 주가지수의 변동이 없으므로 CB 발동에 따른 주식파생상품거래 중단 및 재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는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 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 매매로 재개)) 및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정규거래 중 CB 3단계 발동으로 주식시장 거래 종결 시 당일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미실시

*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 발동 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코스피20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대비 5% 이상(코스닥150 선물거래종목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코스닥 150 수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 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2-3. 위탁증거금제도

(1) 기본예탁금

▶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상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예탁

▶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 받는 사전위탁증거금과 정규거래시간의 종료 후에 예탁 받는 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① 사전위탁증거금 :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② 사후위탁증거금 :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회사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 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 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탁현금에 가산하는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은 야간거래 장 개시 전에는 결제일이 도래한 매도대금과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하여 예탁현금에 가산할 수 있지만 야간거래 장 개시 후에는 **매도시점과 무관하게 예탁현금에**

대용증권매도대금을 더할 수 있습니다.

* 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

(4)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이란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에서 최초 계약 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액이 선물 또는 옵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유지위탁증거금액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가위탁증거금은 추가예탁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 따라 일별 추가예탁과 장중 추가예탁으로 구분됩니다.

(4-1)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 현금예탁 필요액보다 적은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2시**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4-2)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정규거래시간 중 매 정각(9시1분, 10시~14시, 15시는 제외) 시점에 코스피200이 전일종가 대비 유지 위탁증거금률의 80% 이상 변동할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위탁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합니다.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는 파생상품 계좌 중 모든 위탁계좌에 적용됩니다.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회사가 정하는 시간)*입니다. 단, 회사는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거래일 호가접수시간의 개시 전까지 추가예탁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을 납입하지 않은 위탁자에 대하여 장중추가위탁증거금 부과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을 거부해야 하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기 제출된 미체결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자의 신규거래 등의 위탁은 회사의 수탁 거부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장중 추가예탁이 발생하고 회사가 위탁자에게 추가예탁을 통지하기 전에 위탁자가 신규거래 등을 위탁할 경우 해당 거래는 수탁이 거부될 수 있

습니다.

▶ 그러나, 회사로부터 장중 추가예탁을 통지받은 후에 미결제약정 해소 또는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또는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예탁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야간시간대엔 적용하지 않음)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 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 산출**

◆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 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 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구분	증거금	조치사항
9시	예탁총액 2,500만원	조치 없음
9시1분*	위탁증거금액 4,5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3,000만원	추가 예탁액 2,000만원 부과 통지
9시30분	고객이 500만원 납입, 예탁총액 3,000만원	조치 없음
10시*	위탁증거금액 4,000만원,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2,800만원	추가예탁 부과 해제 가능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 정각, 단 9시는 9시1분)

(5) 예탁불이행시 조치

▶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않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 없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

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자는 예탁시한까지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2-4. 정산, 결제, 인수도

(1)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1-1) 일일정산

▶ 회사는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야간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는 야간거래의 종료 후에 개시되는 정규거래에 포함하여 정산합니다.

▶ 이에 따라 회사와 위탁자는 당일차금*과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해당 거래일의 약정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직전거래일의 정산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거래일의 장 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1-2) 최종결제

▶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까지 보유한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하게 됩니다.

① 현금의 수수 :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② 기초자산을 수수 :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현물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2-1) 옵션대금의 수수

▶ 회사와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합니다.

*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2-2) 권리행사 신고 및 결제

▶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의 종료시점에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도 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그 밖에 비용을 차감한 후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은 권리행사의 신고가 없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회사와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합니다.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 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3) 결제시한

▶ 회사와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합니다. 단, 통화선물거래의 경우에는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시간을 수수시한으로 합니다.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재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 지급액과 총 수령액의 차감액

**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

▶ 위의 수수시한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3.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 장내파생상품 계약명세는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상품별 자세한 내역은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장내파생상품별 계약명세>

구분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주식선물
거래단위	선물가격 × 25만원	옵션가격 × 25만원	액면1억원	1만달러	선물가격 × 10원
결제월· 결제주 및 거래기간	3,6,9,12월 (최장 3년, 7개결제월)	▪ 코스피200 옵션: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매주(최장 1주)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1년이하 결제물: 매월 ▪ 1년초과 결제물: 3,6,9,12월 (최장 3년, 20개 결제월)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2개 (최장 1년, 6개 결제월)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코스피200 옵션: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코스피200 위클리옵션: 매주 월요일, 매주 목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제외**)			
가격표시방법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프리미엄 (포인트)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US $1당 원화 (원/달러)	주식선물가격 (원)
최소호가단위	0.05포인트	▪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0.01포인트 (3년물·5년물·10년물), 0.02포인트 (30년물)	0.1원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최소가격 변동금액	12,500원 (0.05×25만원)	▪ 12,500원 (0.05×25만원) ▪ 2,500원 (0.01×25만원)	10,000원 (3년물·5년물·10년물, 0.01x0.01x 1억원), 20,000원 (30년물, 0.02x0.01x 1억원)	1,000원 (0.1원/달러× 1만달러)	10원~10,000원 ('1원~1,000원' ×10원)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8%→±15%→±20%(정규거래)	±8%→±15%→±20%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3.9%(30년물)	±4.5%	±10%→±20%→±30%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1%	±2%	±0.5%(3년물) ±0.9%(10년물) *5년물, 30년물은 미적용	±1%	±3% 또는 ±6%*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 실시간상·하한가의 범위 : 직전약정가격±가격변동폭

(가격변동폭은 각 상품별 가격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 자세한 산식은 거래소 규정 참조)

** 코스피200위클리옵션의 경우 코스피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해당하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만기 위클리옵션은 상장되지 아니함

4. 장내파생상품거래 시 수탁의 거부 사유 안내

▶ 파생상품거래는 현물거래와 비교하여 한층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반면,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객보호와 시장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자 및 기타부실거래자 등에 대하여 다음의 제한조치를 취합니다.

① 채무불이행자 및 기타부실거래자*, 당사 수탁거부기준에 해당되는 고객의 선물옵션계좌 신규개설을 금지합니다.

* '기타부실거래자' 라 함은 연체금액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에 해당되나 연체지속기간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를 말함.

구분	수탁거부 기준
일반법인	• 계좌개설 기준, **자본금 1억원 미만** • 최대주주가 당사에 부실거래 법인으로 기 등록된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	• 당사 기준, 부실거래 법인의 **최대주주로 등록**된 자

② 기존 선물옵션계좌 보유고객이 채무불이행자 또는 기타부실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신규매매에 대한 수탁을 거부합니다. 단, 증거금을 감소시키는 청산거래는 가능합니다.

▶ 시장질서 유지 및 고객위험관리 차원에서 옵션매도수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Ⅳ. 금융소비자의 권리

▶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고객님께서는 분쟁 조정 또는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당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 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당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를 고객님께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상품: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진행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기재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하고(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예외 가능)거절 시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

- 주의사항: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권

▸ 이 금융상품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중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해당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제공됨